

【 13 】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1999. 5. 10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제안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폐지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 별표1중 3호의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함
- 별표1중 11호의 사업장 폐기물 발생억제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위반 300만원등 세부기준을 정함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5호 팔호 “(법 제24조제3항, 제41조)” 를 “(법 제41조)”로 하며, 제11호, 제12호 과태료 부과 금액란중 “100이상 300이하”를 각각 “100, 200, 300”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중 제3호 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과태료부과기준			[별표1] 과태료부과기준		
적용법	부과 항 목	부과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폐기물 관리법	3. 생활폐기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 16조 제2항)	30	50	100	(삼제)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 24조 제3항 제41조)	30	50	100	5.----- ----- ----- -(법 제41조)
	11. 사업장폐기물 발생액 제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법 제24조 제5항)	100이상 300이하	100이상 300이하	100이상 300이하	11.----- ----- ----- ----- ----- ----- ----- ----- 100 200 300
	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0조 제3항)	100이상 300이하	100이상 300이하	100이상 300이하	12.----- ----- ----- ----- 100 200 300

第39編 環 境 第3章 廢棄物管理 廢棄物管理法

第9條 및 第10條 削除 (95·8·4)

第11條 (廢棄物公定試驗方法) 環境部長官은 廢棄物로 인한 危害性의 判斷 및 廢棄物의 처리방법의 決定에 필요한 基礎資料가 되는 廢棄物의 性狀 및 汚染物質의 溶出등을 分析함에 있어서 그 分析의 정확과 統一을 기하기 위하여 廢棄物公定試驗方法을 정하여 이를 詮示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第2章 廢棄物의 排出 및 처리

第12條 (廢棄物의 처리기준등) 누구든지 廢棄物을 收集·運搬·보관·처리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5·8·4)

第13條 (生活廢棄物의 처리등) ①市長·郡守·區廳長은 管轄區域안에서 排出되는 生活廢棄物을 收集·運搬·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이 지정하는 地域을 제외한다. (改正 95·8·4)

②市長·郡守·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第2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이하 “廢棄物處理業者”라 한다)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8·4)

③市長·郡守·區廳長은 生活廢棄物을 收集·運搬·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95·8·4)

④環境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를 정하고자 하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廢棄物排出量에 따라 手數料를 차등 徵收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新增 95·8·4)

第14條 削除 (95·8·4)

第15條 (生活廢棄物排出者の 處理協助等) ①生活廢棄物이 排出되는 土地·建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이하 “生活廢棄物排出者”라 한다)는 관할 市·郡·區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生活環境保護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廢棄物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減量하여 排出하여야 한다. (改正 95·8·4)

②生活廢棄物排出者は 市·郡·區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生活廢棄物을 종류·性狀別로 分離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改正 95·8·4)

第16條 (生活廢棄物保管施設등의 設置) ①市長·郡守·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生活廢棄物排出者로 하여금 環境部令이 정하는

第39編 環境 第3章 廢棄物管理 廢棄物管理法

基準에 의한 生活廢棄物保管施設 또는 容器를 設置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3·4, 97·12·13 法5454)

②市長·郡守·區廳長은 生活廢棄物排出者가 設置하는 保管施設 또는 容器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準則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期間을 정하여 生活廢棄物排出者에게 그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5·3·4, 97·12·13 法5454)

第17條 내지 第23條 刪除 (95·3·4)

第24條 (事業場廢棄物排出者の義務等) ①事業場廢棄物을 排出하는 事業者(이하 "事業場廢棄物排出者"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改正 95·3·4)

1. 事業場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廉棄物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生產工程에 있어서는 技術開發 및 再活用등의 방법으로 事業場廢棄物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②環境部令이 정하는 事業場廢棄物排出者は 事業場廢棄物의 종류·發生量등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事項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市長·郡守·區廳長은 申告받은 사항중 指定廢棄物에 관한 사항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を 거쳐 環境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5·3·4)

③事業場廢棄物排出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帳簿를 비치하고, 事業場廢棄物의 發生量·再利用 및 再生利用狀況·處理實績등을 記錄하여, 그 보존기간은 最終記載일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改正 95·3·4)

④大元領令이 정하는 業種 및 규모이상의 事業場廢棄物排出者は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場廢棄物의 發生抑制를 위하여 環境部長官과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이 環境部令이 정하는 基本方針과 節次에 따라 氣合하여 告示하는 指針을 준수하여야 한다. (新設 95·3·4)

⑤環境部長官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指針을 적당히 사용없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事業場廢棄物排出者에 대하여는 事業場廢棄物의 發生抑制에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新設 95·3·4)

第25條 (事業場廢棄物의 처리) ①事業場廢棄物排出者は 그의 事業場에서 발생하는 廉棄物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廉棄物處理業者, 第4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廉棄物을 再生處理하는 者, 第4條 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廉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에게 委託하여 처리하

發棄物中間處理施設을 갖추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發棄物을 再生處理하는 営業

5. 發棄物綜合處理業

發棄物處理施設을 갖추고 發棄物을 再生處理, 中間處理, 치중처리를 함께 하는 営業

③ 第2項第2號 내지 第5號에 해당하는 發棄物處理業 許可를 받은 때는 同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發棄物收集·運搬業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그 處理對象發棄物을 스스로 收集·運搬할 수 있다.

④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할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営業區域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블일 수 있다. 다만, 그 営業區域의 제한은 發棄物收集·運搬業의 경우에 한한다.

(全文改正 95·8·4)

第27條 (禁治產)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때는 發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

1. 未成年者·禁治產者 또는 限定治產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을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4. 이 法을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猶豫期間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5. 發棄物處理業의 許可가 取消된 者로서 그 許可가 取消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6. 任員중에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全文改正 95·8·4)

第28條 (許可의 取消 등)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發棄物處理業者が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営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1. 第27條第1號 내지 第4號 또는 第6號에 해당된 경우. 다만, 法人的 任員중 第27條第6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2月이내에 그 任員을 改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편 환경보호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1994. 8. 25]
조례 제1508호]

개정 1997. 8. 11 조례 제1640호
개정 1998. 10. 14 조례 제1683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 3 조(의견진술)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꾸러미봉지에 의해 구슬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견진술서로 통지하고,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진술서에 의한다.

③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중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의견을 전술하고 부과권자가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득축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

(총 2)

제8편 환경보호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조례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등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994. 8.25 조례 제15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주군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제12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 8.11 조례 제16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10.14 조례 제16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면 환경보호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편 환경보호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조례

〔별표 1〕 과태료부과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폐기물관리법	1.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법 제7조) 가. 별도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다. 출식 또는 행락증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동법 제26조의 폐기물처리업자는 제외) 2. 생활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 제2항) 가. 생활폐기물의 배출시에는 군수가 지정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로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3 5이상 10이하 10이상 20이하 20이상 50이하 50이상 100미만	3 5이상 10이하 10이상 20이하 20이상 50이하 50이상 100이하	3 5이상 10이하 10이상 20이하 20이상 50이하 50이상 100이하

(추 2)

제8편 환경보호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폐기물 관리법	나. 지정된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시에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	5	5	5
	3.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6조 제2항)	30	50	100
	4.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30조 제4항)	100	100	100
	5.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24조 제3항 제41조)	30	50	100
	6. 기술관리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법 제39조 제1항)	100	100	100
	7.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폐기물 처리담당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아니한 경우(법 제40조)	30	50	100
	8.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법 제43조 제1항)	30	50	100
	9.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43조)	100	100	100
	10.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7조 제1항)	100	100	100

제8편 환경보호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 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폐기물 관리법	11. 사업장폐기물 발생억제에 필 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 업장폐기물 배출자(법 제24 조 제5항)	100이상 300이하	100이상 300이하	100이상 300이하
	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 니한 경우(법 제30조 제3항)	100이상 300이하	100이상 300이하	100이상 300이하
	13.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가. 음식물쓰레기를 양주군수 가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 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 니한 경우	5	10	20
	나.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 는 경우	5	10	20
	14.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 장이(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 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쓰 레기를 처리 또는 배출하 지 아니한 경우	20	50	100
	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 행계획신고서, 음식물쓰레 기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 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감량의무사업장 음 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	10	20	30

제8편 환경보호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조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단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폐기물 관리법	재활용 처리실적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6조 제항)	30	50	100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 자체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 제5항)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점객업소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66제곱미터미만의 식품점객업소에서 1회용품(이쑤시개는 제외한다) 사용자체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첨합(라미네이션)된 1회용품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점객업소중 객실과 객실면적이 66제곱미터이상의 식품점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이쑤시개는 제외한다) 사용자체 및 합성수지로	100	200	300
		150	250	300

제8면 환경보호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조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도표(코팅)또는 철합(라미네이션)된 1회용품 광고선 전물의 제작, 배포자체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의 2.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점객업소 중 객실과 객실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의 식품점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중 이쑤시개의 사용자체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에서 1회용 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일반목욕장업(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2) 특수목욕장업(사우나탕, 증기탕, 복합목욕탕)	30	50	100
	라.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증 객실이 7실이상인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호텔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업	100 150	200 250	300 300
		150	250	300

제8면 환경보호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 여관업 및 여인숙업 마. 도·소매업 진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및 쇼핑센타 및 매장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첨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때 바. 도·소매업 진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활용품의 교환, 판매매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사.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락제조업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때 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쇼핑센타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은 제외한다) 가정용기기, 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	100 150 200	200 250 250	300 300 300

제8면 환경보호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조례

적용법 자원의절	부과항목	부과금액(만 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 음악 및 예술관련사업에서 도포(코팅) 또는 철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때			
	2.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분리보관 기준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6조 제2항) 가.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1 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나. 다향배출자로서 면적이 1 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30 80	50 90	100 100
	3.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하위로 기록한 자(법 제34조 제3항)	30	50	100

- ※ 1. 위반행위가 2이상일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양 주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35 호

1999년 4월 26일 (월)

차 례

규 칙

양주군 규칙	제 1094호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증개정규칙	2
양주군 규칙	제 1095호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증개정규칙	4

고 시

양주군 고시	제 1999-31호	유수인용(주수)허가 사항 고시	11
양주군 고시	제 1999-32호	지적측량기준점성과고시	12

공 고

양주군 공고	제 1999-138호	양주군오수·불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입법예고	15
양주군 공고	제 1999-144호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입법예고	16
양주군 공고	제 1999-145호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입법예고	17
양주군 공고	제 1999-147호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증조례(안)입법예고	17
양주군 공고	제 1999-167호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	18

회	74호	이재우	윤석현			
람						

발행 : 양주군

편집 : 문화공보실

양 주 군 보

제 135 호

공 고

양주군 공고 제 1999-138호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일법예고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4월 일
양 주 군 수

1. 조례제명 :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2. 개정이유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제를 완화한 내용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규제하고 있는 규정 및 환경부기준과 부합되지 않은 일부내용을 동일한 기준으로 개정하여 주민생활 편익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오수정화시설 등의 설치 및 준공검사에서 그 시공에 있어 철근배근, 배관, 여재재차, 콘크리트 타설 등 군수가 지정하는 공정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입회하에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폐지함.
 - 나. 오수정화시설 등의 관리에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규정이 상위법과 중복되어 폐지함.
 - 다.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에 대하여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화조를 청소하는 규정이 상위법과 중복되어 폐지함.
 - 라.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고하는자는 그 시공에 있어 철근배근, 배관, 여재배차, 콘크리트타설, FRP 등의 공정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시행하는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폐지함.
 - 마.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자가 설치한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분기별 1회이상, 축산폐수의 설치신고를 한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은 6월마다 1회이상 방류수 수질측정을 하는 규정과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는 규정이 상위법과 중복되어 폐지함.
 - 바. 잔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 및 건강 규정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폐지함.
 - 사. 동법률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분기준을 1차에서 3차시까지 세부기준을 정하여 위반 횟수별로 부과하는 환경부기준과 동일하게 정비함.
 - 아.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하는자는 영업구역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또는 법인으로하여 수집, 운반 또는 정화조 청소업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상위법의 규제완화로 폐지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4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주군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51-820-2254-5. 오수관리담당부서)
5.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양 주 군 보

제 135 호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양주군 공고 제1999-144호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일법예고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4월 20일
 양 주 군 수

1. 조례제명 : 양주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2. 개정취지 : 정부의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99. 2. 8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동 법령에 근거하여 규제해 오던 청결·유지등 대청소 실시의무와 생활폐기물을 배출자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에 관한 규정, 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 기준 및 지도·감독, 폐기물처리실적 제출 등을 규정한 양주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증 법령과 충복 또는 근거없는 규제를 제거하여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군수는 주민들로 하여금 생활환경의 청결유지, 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하여 지도하고 전문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매분기 1회 이상 트자, 전문의 대청소를 실시하게 하는 규정이 폐기물관리법 제6조와 충복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사항으로 폐지함.
 - 나. 주민들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자기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설치시에는 설치승인 신청서에 설치 및 유지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는 내용이 폐기물관리법 폐지에 따라 법에 근거없는 사항으로 폐지함.
 - 다.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 허가업자에게 필요한 인력·장비 시설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동법에 근거없이 규제하는 사항으로 폐지함.
 - 라. 군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의 처리능률 향상과 군민편의 제고, 공동위생청결유지를 위하여 허가조건 준수여부,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폐기물처리에 수반하는 사항을 연1회 이상 지도 감독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폐기물관리법에 근거없이 규제하는 사항으로 폐지함.
 - 마.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매년 1월말까지 폐기물처리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폐기물관리법과 충복된 사항으로 폐지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5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점지를 종으로 세워서 작성)를 군수(참조 :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351-820-2250-2251)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양 주 군 보

제 135 호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전화
 3) 기타 참고 사항

양주군 공고 제1999-145호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일법예고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
 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4월 20일
 양 주 군 수

1. 조례제명 :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조례
2. 개정취지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기준을 완화하고
 자 할.
3. 주요내용
 - 가.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의 등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계자 및 과태료 세부
 기준을 정함.
 - 1)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자에
 대한 규정을 폐지함.
 - 2)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3항(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폐지에 따라 "별표1의" 5호의 법 제
 24조 제3항은 폐지함.
 - 3) 사업장폐기물 발생억제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자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가 1차에서 3차까지 100만원이상
 300만원 이상인 것을 위반회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세부기
 준을 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5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채한 의견서(16절지를 증으로 세워서 작성)를 군수(참조 :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51-820-2250-2251)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전화
 - 3) 기타 참고 사항

양주군 공고 제1999-147호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증개정조례(안)일법예고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4월 일
 양 주 군 수

양 주 군 보

제 135 호

1. 조례제명 :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2. 개정이유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제를 완화한 내용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규제하고 있는 규정 및 환경부기준과 부합되지 않은 일부내용을 동일한 기준으로 개정하여 주민생활 편익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3. 주요내용
 - 가. 전체면적은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8개(남자용 3개, 여자용 5개)이상, 소변기 5개 이상 또는 5인용 이상을 설치하는 세부설치 규정이 상위법과 충복되어 폐지함.
 - 나. 공중화장실을 1일 3회이상 청소·소독·악취의 발산과 파리·도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 번식을 방지하는 세부 유지·관리기준 규정이 상위법과 충복되어 폐지함.
 - 다. 공중화장실을 불결하게 유지하거나,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하는 자에게 개선·청결등에 관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는 규정이 상위법과 충복되어 폐지함.
 - 라. 공중화장실 사용료를 징수하는 유료화장실 승인 규정과 유료화장실을 승인받은자의 준수사항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폐지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4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주군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51-820-2254-5. 오수관리담당부서)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 사항

양주군 공고 제1999-167호

1. 의정부시 고시 제1996-34호(96. 6. 17)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드로(증로 1-9호선)에 대하여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에 따라 일부 구간에 대한 선형을 변경코자
2.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2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란 공고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양주군청 도시과, 장흥면사무소와 경기도북부출장소(드로교통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란기간내 서면(주소, 성명, 단체명, 의견내용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4월 1일
양 주 군 수

- 가. 공란기간 : 99. 4. 1 ~ 99. 5. (신문공고 제재일로부터 15일간)
- 나. 공람 장소
양주군청 도시과(0351-820-2351-2) 및 장흥면 사무소(0351-820-2671) 경기도북부출장소 드로교통과(0351-870-2626)
- 다. 변경 사유
- 드로확장 및 포장 공사에 따른 일부구간 선형 변경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

□ 개정구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폐지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 별표1중 3호의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함
 - 별표1중 11호의 사업장 폐기물 발생억제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위반 300만원등 세부기준을 정함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폐기물관리법 제16조 제2항, 제24조 제3항, 제24조 제5항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1999. 4. 20 ~ 1999. 5. 10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